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

(황 동 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132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11월 일

발 의 자: 황동현, 정정희, 이종숙, 신낙형
송순효, 김현희, 김용원, 이충현
김성한, 최동철, 김동협, 강선영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우리구가 설치·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지판 등에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고,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공공시설물 등, 표지판 등, 설치 및 건립비용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
다.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함(안 제3조)

라. 공개의 범위 및 방법과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,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나. 협조부서: 재무과

다. 입법예고: 2020. 11. 6. ~ 2020. 11. 11.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,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시설물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.
 - 가. “공공시설물”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·출연기관이 공공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.
 - 나. “공공시설”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·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관공서, 구민회관, 공공도서관, 문화·체육시설, 영유아·어린이·청소년시설, 시장 편의시설, 사회복지·노인·장애인시설, 도로, 교량, 우수지, 공원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.
2. “표지판 등”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(동판, 석판 등)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.
3. “설치 및 건립비용”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) ① 서울특별시

강서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재물조사 대상물품
2.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(도로 포장, 보도블럭, 맨홀 등)

제4조(공개범위)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
2.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.

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시하도록 한다. 다만,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시하고, 합산 표시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개 방법 및 내용)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1.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
2. 설치일
3. 공사기간

4. 발주기관
 5. 시공, 설계, 감리자의 성명(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 6. 설치 및 건립비용
 7. 관리부서
-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공개대상 공공시설물(제4조제2항 관련)

구 분	시 설 물
1. 도로·교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· 주·정차 단속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· 도로표지판 및 버스표지판· 가로등, 보안등· 벤치, 그늘막 등 편익시설물· 자전거 보관대· 광고물 게시대
2. 공원·체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공원 안내표지판· 벤치, 음수대,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· 미술작품, 조형물, 놀이기구· 체육시설물(테니스장, 축구장, 운동기구 등)· 하천시설물
3. 청소·위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가로휴지통
4. 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그 밖의 시설물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 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소류지(小溜池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- 사. 공유림 관리
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 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 - 가. 지역개발사업
 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 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 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 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 - 사. 자연보호활동
 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 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